

한·중 FTA시대, 對중국 식품수출을 위한 중국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hinese Legislation for food exports to
China in This Korea-China FTA Era

장은정**
Jang, eun-jeong

목 차

- I. 머리말
- II. 중국 식품법제의 변화
- III. 중국의 수입식품 규제제도와 한·중 FTA
- IV. 중국의 위생검역규범의 국제적 검토 및 한·중 FTA 활용
- V. 맺음말

국문초록

사람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최근 식품산업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3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식품시장은 중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중국인들의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양에서 질로 변화하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논문접수일 : 2016. 06. 30.

심사완료일 : 2016. 07. 25.

게재확정일 : 2016. 07. 25.

* 본 논문은 중국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2016.5.20.)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법학박사·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식품안전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져 중국인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자국식품보다 수입 식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식품도 포함된다. 특히 중국은 우리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류효과 또한 맞물려 있어 한·중 FTA의 타결은 중국 식품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식품 산업의 성장 추세와 함께 한·중 FTA가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식품 시장 진출 기회의 확대와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면 중국 법제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하겠다. 중국의 식품시장이 떠오르는 블루오션이기는 하지만, 관련 법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또한 수입식품에 대해 다양한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식품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제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對중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보 및 원활한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한·중 FTA, 식품, 수출, 중국 법제, 중국 시장

I. 머리말

세계 주요국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¹⁾ 또한 한·중 FTA의 공식 타결 후, FTA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0 7대 유망수출산업 및 품목’²⁾에 식품산업이 포함되었다.

특히, 13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식품시장은 현재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타국의 식품기업들은 이미 중국 내수 식품시장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격적으로 중국 식품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20일 공식 발효된 한·중 FTA는 중국 식품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식품시장은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한자녀 정책, 그리고 고령화로 인하여 간편식과 유아식,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입식품시장 규모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연이은 대형 식품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식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는 소비패턴과 맞물려 수입식품 선호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소비트렌드를 주도하는 80후(80后) 세대들이 고급 수입식품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여기에 중국 내 식지 않는 한류열풍까지 더해져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비교적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1) 2013년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5조 4천억 달러로 이미 IT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더 커졌으며 또한 2017년에는 6조 3천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식품시장의 성장 원인은 세계 인구증가 및 고령화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12/11/0807010000AKR20141211160700063.HTML/>, 검색일: 2016.4.21

2) 한국수출입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7대 유망수출산업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부합하고 국내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산업 중 성장률이 빠르고 5-10년 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7대 유망수출산업은 제약, 화장품, 가공식품, 항공기 및 부품, 스마트 그리드, LED, 이차전지 등이다. 그중 가공식품은 현재는 수출 초기 단계이지만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비중도 확대되어 3%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유망수출산업 품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 유망수출산업”, Issue Report, 2015-산업이슈-10, (2015.9.2)

한·중 FTA 체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국 내수 식품시장 공략을 위해 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對중 식품 수출을 위한 관련 중국법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내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전략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검역체계와 통관절차의 벽이 높아 우리 기업들의 對중 수출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들의 중국법제에 대한 이해 부족 또한 중국 시장 개척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아직 식품관련 법제의 체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주의 체제하의 위생검역, 통관, 수입식품 규제 등은 비교적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식품시장에 진출한 기업 또는 진출예정인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차별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중국의 식품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앞서 말한 한·중 식품위생기준과, 검역체계, 통관절차, 수입식품 규제제도의 방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식품의 對중 수출 확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 작업으로 중국의 기본적인 식품법제를 살펴보고 중요한 수입식품 규제제도와 한·중 FTA 식품 관련 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분야별로 더 세부적이고 심도 깊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활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對중 수출 확대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중국 식품법제의 변화

1. 중국 식품관련 법제의 변화

가. 중국 식품관련 법제의 변화

중국 정부 수립 후, 식품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53년 제정된 “청량음료

및 음식물관리방법(清涼飲料食物管理辦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979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管理條例)”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제정한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최초의 행정법규이다. 198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試行))”(시험시행)³⁾을 제정하여 식품위생감독 제도의 시행, 식품용기, 위생설비,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였다.⁴⁾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개혁·개방 조치의 심화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품관련 법률이 다수 제정되었으며⁵⁾ 특히 1995년에는 현재 식품안전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이 제정되었다⁶⁾. 식품위생법은 위생부의 단독 관리감독을 받았으나 점차 사람들이 먹거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민관 모두 위생부가 식품안전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⁷⁾ 또한 ‘食品衛生’에 대한 관념이 ‘食品安全’으로 넘어감에 따라 ‘衛生’과 ‘安全’의 두 개념이 서로 상이하고 적용 범위 또한 달라 ‘食品衛生’이 ‘食品安全’을 대체하기에 역부족인 상황 하에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식품안전을 위한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⁸⁾ 이 외에도 중국 내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중국 정부는 2007년 4월 최초의 식품 및 약품안전 국가급 계획인 “국가 식품·약품안전 11차 5개년 계획”⁹⁾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동년 8월에는 “식품안전백서(食品質

3) (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試行))已由中華人民共和國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五次會議于1982年11月19日通過, 現予公布, 自1983年7月1日起試行, 失效時間 1995年10月25日.

4) 김용길,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고찰”,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2015), 23면.

5) 어업법(1986. 7. 1.), 계량법(1986. 7. 1.), 표준화법(1989. 4. 1.), 수출입동식물검역법(1992. 4. 1.), 제품품질법(2000. 9. 1.), 농업법(2003. 3. 1.), 행정허가법(2004. 7. 1.), 농산품 품질 안전법(2006.11.1.), 동물방역법(2008. 1. 1.), 행정처벌법(2009. 8. 27.), 위생검역법(2007. 12. 29.).

6) 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是爲保證食品衛生, 防止食品污染和有害因素對人体的危害, 保障人民身体健康, 增强人民體質, 而制定的法律, 由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十六次會議于修訂通過, 自1995年10月30日起施行, 廢止時間 2009年6月1日.

7) 陳仕學, “完善食品安全政府監管的路徑”, 『江蘇調味副食品』 第4期 總第139期, (2014年), 38頁.

8) 李富強, “研究《食品安全法》在實際應用中存在的問題及相應措施”, 法制博覽, 2016年16期189頁.

9) 이 계획은 중국이 식품·약품안전에 관해 최초로 발표한 국가의 식품안전에 관한 장기전략 방

量安全狀況白皮書)”를 만들어 식품안전을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판단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같은 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이하 ‘국가질검총국’)은 “식품리콜관리규정(食品召回管理規定)”¹⁰⁾을 공포하여 자발적 리콜과 책임리콜의 실시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유해한 식품으로 확인이 되면 모두 회수하도록 하였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식품 안전에 관한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 6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식품안전법에 관한 개정 초안”이 통과되어 동년 6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이 시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식품안전법의 특징은 기존의 식품위생법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또한 식품의 생산과 가공뿐만 아니라 식품과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책임범위 또한 강화하였다.

나. 중국의 식품관련 국가기관

중국의 주요 식품안전 관리 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 총국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품질 및 개량, 수출입제품에 대한 검사, 출입국 위생 검역, 수출입 동·식품 검역 및 품질인증·인정·기준화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 ● 품질감독·검사·검역 관련 법률과 법규의 초안을 작성하고 전국의 품질업무관리지도와 품질향상을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 ● 상품품질에 관한 중대 사건 조사, 계량업무의 통합관리, 국가계량기준 및 표준물질의 심의비준, 출입국검사·검역 업무에 관한 제도 정비
------------------------------------	---

안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식품·약품 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절차적인 지침을 완비한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계획에는 식품·약품감독과 관리체계의 개선, 법제의 완비와 식품·약품 안전표준 마련, 그리고 기타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0) 食品召回管理規定已經2007年7月24日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局務會議審議通過，現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p>국가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 (中華人民共和國國家 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직무 내용으로는 직업위생, 환경위생, 방사능위생, 공공장소 위생, 음용수 위생 및 관리 규범, 학교위생, 표준 및 정책 조치 제정, 조사·평가·감독, 전염병 예방 감독, 법에 근거한 식품안전 표준 제정,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식품과 식품첨가물 및 관련 제품의 신제품과 원료에 대한 안전성 심의 조사 등이 있음
<p>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 (國家食品藥品監督管 理總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 등의 식품안전과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관한 감독관리 법률 초안 작성과 정책안 작성 • 식품 행정 허가에 관한 실시 방법 제정 및 감독 수행, 식품안전 문제 조사 처리 체제 구축, 식품안전 정보 발표 및 리스크 모니터링, 식품안전 표준 제정 참여 • 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감독 관리 관련 조사 제도 제정 및 시행, 식품·약품 검사 체제 및 정보화 기반 확립, 식품약품 안전 홍보, 교육, 국제 교류 및 협력 전개
<p>농업부 (中華人民共和國農業 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 담당 외에 상무부의 돼지 지정 도축 감독관리 직무수행 • 관련 산업의 발전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농촌 경영 관리체제의 개선책임, 식량 등 주요 농산품 생산지도와 농업발전 촉진, 농산품가공업 구조 조정 및 제품안전 평가 책임, 종자, 묘목, 가축, 약품, 사료, 사료첨가제, 농약, 비료 등의 기타 농업 관련 제품의 품질 및 사용의 관리감독 책임,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농업 발전 연구, 국무원이 위임한 기타 업무 담당

출처: 필자 자체정리

국가질검총국은 2002년 4월 국가질량기술감독국(國家質量技術監督局)과 국가출입경험검역국(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을 통합해 설립된 국무원 직속기관이자 대표적인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조직으로서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품질과 검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질검총국기관 내 17개의 사(司)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사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규사(法規司): 질량감독·검사·검역에 관한 법률 및 법규의 초안을 작성하고 양자간·다자간 협정, 협의 및 의정서 초안에 대한 법률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질량관리사(質量管理

司): 품질향상에 관한 정책조치의 제정, 국가품질장려제도의 실시 및 상품품질에 관한 중대한 사건을 조사한다. ③ 계량사(計量司): 계량에 관한 법률·법규를 실시하고 국가의 법정계량기관을 관리한다. ④ 통관업무사(通關業務司): 출입국검사·검역에 관한 종합업무를 수행하고 증서체결, 표시제도의 제정·실시 외 수출입 검사·검역목록을 작성한다. ⑤ 위생검역감관사(衛生檢疫監管司): 출입국 위생검사·검역제도를 제정하고, 출입국 위생·검역, 전염병 탐지, 위생·감독을 실시한다. 그 외 다수의 사(司)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¹¹⁾

국가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는 기존의 국가인구 및 가족계획위원회와 위생부가 통합된 기관으로서 종합감독국, 법제사, 재무사, 체제개혁사, 식품안전표준 및 모니터링 평가사 등 총 23개 내부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 및 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국민보건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 변경되었다.¹²⁾ 농업부는 194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나 여러 차례 부서 개편으로 통폐합 되었다가 1988년 4월에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에 의해 다시 농업부로 설립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농업부는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을 주관하는 국무원의 조직 부서로 재식농업, 축산업, 수산업, 농지개간, 향진기업 및 사료공업 등의 산업에 관한 종합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청(辦公廳)을 비롯한 정법사(政法司), 종자국(種子局), 축산업사(畜牧業司), 농지개간국(農墾局), 어업국(漁業局), 수의국(獸醫局) 등을 포함한 총 20개 내부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¹³⁾

11)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簡稱質檢總局)是國務院主管全國質量、計量、出入境商品檢驗、出入境衛生檢疫、出入境動植物檢疫、進出口食品安全和認證認可、標準化等工作, 并行使行政執法職能的直屬機構。質檢總局機關內設17個司(廳、局), 即: 辦公廳, 法規司, 質量管理司, 計量司, 通關業務司, 衛生檢疫監管司, 動植物檢疫監管司, 檢驗監管司, 進出口食品安全局, 特種設備安全監察局, 產品質量監督司, 執法督查司(國家質檢總局打假辦公室), 國際合作司(港澳台辦公室), 科技司, 人事司, 計劃財務司, 督察內審司。http://www.aqsiq.gov.cn/zjgk/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門戶網站

12) 2013年3月22日,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SFDA)改名為“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CFDA), 這意味着這一新組建的正部級部門正式對外亮相, 食品安全過去多頭分段管理的“九龍治水”局面結束。

13) http://www.moa.gov.cn/(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2. 중국의 식품관련 법률 체계와 개별법

가. 중국의 식품관련 법률 체계

중국의 법률 제정 및 개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며¹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중국의 중앙 입법기관이다. 중국의 법률은 제정기관에 따라 기본 법률과 기타법률로 구분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기관과 기타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¹⁵⁾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¹⁶⁾ 국무원은 행정법규의 제정 및 개정 기관이며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중국의 식품생산가공 법률체계와 관련법률

제정기관	분류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	법률 식품안전법, 제품질량법, 표준화법, 행정허가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계량법, 농산품품질안전법, 행정처벌법, 행정소송법, 농업법,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수출입상품검사법, 국경위생검역법, 어업법, 동물방역법, 제조물책임법
	행정법규 식품안전법실시조례, 공업제품생산허가관리조례, 유제품질량안전감독관리조례, 식품등제품안전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유통분야식품안전관리방법, 식량유통관리조례, 인증인가조례, 별크식품위생관리규범,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 식염전문경영방법, 돼지도살관리조례
국무원	

14) 立法法 第七條

15) 憲法 第六十二條

16) 憲法 第六十七條

국무원 각 부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부문규장(총국령)</th> </tr> <tr> <td>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식품생산가공기업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 재래시장식품위생관리규범, 식염가격관리방법, 위생행정집법문서규범, 식용균균종관리방법, 농업야생식품보호방법, 농업유전자생물수업안전관리방법, 유전자식품위생관리방법, 수출입유전자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식품첨가제생산허가심사통칙, 영유아조제분유생산허가심사세칙, 사탕류제품등 13종류식품생산허가증심사세칙 </td> </tr> </table>	부문규장(총국령)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식품생산가공기업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 재래시장식품위생관리규범, 식염가격관리방법, 위생행정집법문서규범, 식용균균종관리방법, 농업야생식품보호방법, 농업유전자생물수업안전관리방법, 유전자식품위생관리방법, 수출입유전자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식품첨가제생산허가심사통칙, 영유아조제분유생산허가심사세칙, 사탕류제품등 13종류식품생산허가증심사세칙
부문규장(총국령)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식품생산가공기업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 재래시장식품위생관리규범, 식염가격관리방법, 위생행정집법문서규범, 식용균균종관리방법, 농업야생식품보호방법, 농업유전자생물수업안전관리방법, 유전자식품위생관리방법, 수출입유전자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식품첨가제생산허가심사통칙, 영유아조제분유생산허가심사세칙, 사탕류제품등 13종류식품생산허가증심사세칙			
성인대 및 상무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성 법규</th> </tr> <tr> <td> 강서성표준화관리조례, 강서성제품질량감독관리조례, 헤이룽장성 식품안전 조례, 헤이룽장성식품안전신고장려방법, 헤이룽장성식품안전기업표준비안관리방법, 헤이룽장성식품위생관리조례, 지린성 식품위생관리조례, 랴오닝성식품노점과시장식품위생관리조례 </td> </tr> </table>	지방성 법규	강서성표준화관리조례, 강서성제품질량감독관리조례, 헤이룽장성 식품안전 조례, 헤이룽장성식품안전신고장려방법, 헤이룽장성식품안전기업표준비안관리방법, 헤이룽장성식품위생관리조례, 지린성 식품위생관리조례, 랴오닝성식품노점과시장식품위생관리조례
지방성 법규			
강서성표준화관리조례, 강서성제품질량감독관리조례, 헤이룽장성 식품안전 조례, 헤이룽장성식품안전신고장려방법, 헤이룽장성식품안전기업표준비안관리방법, 헤이룽장성식품위생관리조례, 지린성 식품위생관리조례, 랴오닝성식품노점과시장식품위생관리조례			

출처: 필자 자체 정리

중국은 위 표와 같이 식품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중국식품에 대한 불신을 잠식시키기 위해 매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북 3성은 중국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서 식품 관련한 다양한 지방성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¹⁷⁾ 중국의 연구 자료에

17) 2013년 8월 기준, 선양시의 농산물 가공기업은 3,000개를 넘어섰으며 세계 500대 기업 8개가 위치해 있다. 또한 2014년 선양시 정부는 '농산물가공산업 5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3년 기준, 지린성 내 규모 이상 농산물 가공기업은 3,680개이며 그 중 국가급 기업은 47개, 성급 중점 기업은 494개 이다. 동년 농산물 가공 프로젝트는 166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304억 위안이며 고기술의 식품 가공기업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농식품가공업은 헤이룽장성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식품가공산업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1,395억 위안으로 총 고정자산 건설 프로젝트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유아용 분유, 유제품, 밀가루, 포도주 및 과일주 등이 대표적인 헤이룽장 지역의 가공식품이다. 헤이룽장성 정부는 "헤이룽장성 녹색식품산업발전강요(黑龍江省綠色食品產業發展綱要)"를 발표하고, 유기농 식품가공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4670&ARTICLE_SE=20302(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동북 3성, 중국 가공식품의 중심이 되다", 검색일: 2016.7.27.

따르면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지역으로 헤이룽장성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이룽장성은 중국 내 최대 식량생산지로서 전국 식량 생산량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력한 투자 협력 산업으로 유기농식품, 녹색식품 등의 식품 산업을 꼽고 있다. 특히 한국은 농산품 자급률이 1/3에 불과한 단점이 있으나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엄격하고 유기농 식품 산업이 발달하여 녹색 유기농 식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수출과 개발에 있어서도 헤이룽장성과 한국은 협력과 발전의 상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⁸⁾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헤이룽장성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백지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對중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 정책과 법규를 살펴보고 타당성을 분석한 후, 헤이룽장성 식품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적 접근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중국의 식품관련 법률

(1) 식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¹⁹⁾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은 1979년 “중국식품위생관리조례”에서 1995년 “식품위생법”, 그리고 2009년 “식품안전법”으로 변경되었다. 2009년 제정된 식품안전법은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고 규범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래 중국에서 식품안전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미국 등 선진국의 리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식품안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식품오염 방지 및 인체 유해요인의 제거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18) 封安全, 劉喜濤, “深化黑龍江省与韓國經貿合作的對策建議”, 『對外經貿』第6期·總第252期, (2015年), 61頁.

19) 식품안전법은 식품 유통, 식품첨가제 생산 및 경영, 식품생산과 가공, 식품포장재, 세제, 소독제와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생산 및 경영에 적용되며 내용으로는 총칙,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기준, 식품생산경영, 생산경영과정제어, 라벨, 설명서 및 광고, 특수식품, 식품수출입, 식품안전사고처리, 관리감독, 법률책임 등이 있다.

식품안전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4월 21일에 “식품안전법초안”이 공포되어, 2009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식품안전법 제정 후에도 끊이지 않는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식탁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안전법은 여러 차례 개정 되었으며 식품 생산 및 유통 업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²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안전법의 주요 특징은 첫째, 식품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둘째,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셋째, 식품산업 관련 기업의 책임 규정을 강화하였다. 넷째, 식품안전사고 및 식품안전에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섯째, 법률의 적용범위가 식품에서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그 외 살펴볼 특징으로는 제1장에 식품안전업무 모범수행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표창과 장려제도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업무 및 평가 대상에 식품 관련 제품을 추가하였다. 제5장에는 식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추가하였고 제7장에는 식품안전사고 대비 응급 메뉴얼 포함 사항과 식품안전사고 조사 담당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중국은 식품안전 조직체계 개편과 식품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외 자국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식품안전법의 주요 식품관련 법률

20) 현재 시행중인 법률은 2014년 7월 제12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식품안전법초안’이 통과되어 이듬해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거쳐 2015년 10월1일 시행된 규정이다. 기존 10장 104조항에서 10장 154조항으로 50조항이 추가 되었으며 신규내용 외에 기존내용이 보완되었고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식품생산경영부분에서 기존 27~56조항으로 구성된 내용을 1절 일반규정(33~43조항); 2절 생산경영과정관리(44~66조항); 3절 라벨, 설명서 및 광고관리(67~73조항); 4절 특수식품 관리(74~83조항)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개정의 8대 방향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법률책임제도 구축을 포함하고 있어 식품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자 구제와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何莉, “論中國食品安全監管机制的完善路徑”, 《食品与机械》, 第31卷第1期, 2015年, 277頁.

중국 식품안전법 외 주요 식품관련 법률

<p>제품질량법 (產品質量法)²¹⁾</p>	<p>제품질량감독과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법을 규범화한 것으로 제품질량감독과 행정집행 규정에 관하여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제품질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질량기술감독부에 권한을 주어 식품생산가공기업에 관한 제품질량안전감독관리 책임을 지도록 함</p>
<p>표준화법 (標準化法)²²⁾</p>	<p>표준화법은 질량기술감독부의 식품생산가공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의 방향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표준(GB), 산업표준(HG, YY, LY), 지방표준(DB), 기업표준(QB) 등으로 구분됨²³⁾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은 특성에 따라 강제성표준(GB)과 권장성표준(GB/T)으로 구분됨, 인체의 건강과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표준과 법률, 그리고 행정법규 규정의 강제집행 표준은 강제성표준에 속하며 기타표준은 권장성 표준임²⁴⁾</p>
<p>행정허가법 (行政許可法)²⁵⁾</p>	<p>중국에서의 각종 인가 및 허가 신청 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행정관청의 허가 과정을 예측 가능하게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 두었던 사항들을 제도화한 법으로 중국의 법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음²⁶⁾ 행정허가의 설정, 행정허가의 실시기관, 행정허가의 실시과정, 신청과 수리, 심사와 결정, 기간, 공청, 변경과 연장, 특별규정, 행정허가의 비용, 감독감사, 법률책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p>
<p>소비자권익보호법 (消費者權益保護法)²⁷⁾</p>	<p>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 소비자의 알 권리, 소비자의 자주적인 선택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장을 마련하여 경사업자 의무를 더욱 확대하였음, 또한 법률책임 및 분쟁해결에 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였음</p>
<p>농산품품질안전법 (農產品質量安全法)²⁸⁾</p>	<p>본 법의 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 않는 농산물 재배와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조 및 가공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행되어 농지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성 추구에 큰 역할을 하였음, 본 법의 구성으로는 농산품품질안전기준과 원산지, 그리고 생산, 포장, 라벨, 관리감독 및 검사, 법률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p>
<p>제조물책임법 (產品責任法)²⁹⁾</p>	<p>주요 내용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p>

음, 또한 책임에 있어서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의 관리감독에 관한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도 규정하고 있어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빈발한 중국에서 법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됨, 본 법은 가공 또는 제조를 거쳐 판매에 제공된 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함

출처: 필자 자체정리

제품질량법에서 말하는 제품은 가공, 제조, 판매되는 것으로 중국 내에서 제품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본 법을 준수해야 하며³⁰⁾ 식품은 제품질량법의 조정 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법적책임 강화에 관한 내용은 판매자의 배상책임, 결합상품에 관한 배상책임, 신체상해에 대한 비용 부담 및 감소수입 배상, 개인정보 피해배상, 광고주 연대책임이 있고,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상품가격 또는 서비스 비용의 추가 3배 배상 등의 내용 포함하고 있다.

- 21) 제품질량법은 1993년 2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에 한 차례 개정되어 20개 조문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2개 조가 삭제되고 20개 조가 개정되는 등 2/3가량의 조문이 수정되었다.
- 22)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은 1988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23) 이유시, 권찬혁, 박희라, 권기성, 하상도, “국가별 식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공정서 운영체계 현황 분석”, 『Safe Food』 6권2호, (2011), 45면.
- 24) 標準化法 第七條
- 25)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시를 규범화 하고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2003년 8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04년 7월1일 시행되었다.
- 26) 정이근, “중국 행정허가법의 내용과 평가”, 『公法學研究』 第5卷 第3號, 2004.12, 654면.
- 27)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2013.10.25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14.3.15.부터 시행되었으며 1장 총칙, 2장 소비자의 권리, 3장 사업자의 의무, 4장 국가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5장 소비자 조직, 6장 분쟁해결, 7장 법률책임, 8장 부칙, 총 8장 63조로 구성된다.
- 28) 농산품품질안전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농산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총 8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9)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은 1993년 2월 22일 전인대상무위원회 3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0년 7월 한 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00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 30) 產品質量法 第二條

Ⅲ. 중국의 수입식품 규제제도와 한·중 FTA

1.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 강화 동향

중국에서 농푸산첸(農夫山泉) 오염생수 사건과 하수구 식용유, 종이상자 만두, 멜라민 분유파동 등의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관리 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6월 28일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12.5계획(國家食品安全監督體系十二五規劃)”을 발표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국가표준 구축, 수출입식품 안전감독체계 및 식품안전시스템구축, 국가식품안전 정보플랫폼 구축, 검험검측능력 및 검사평가능력 강화, 법률표준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³¹⁾ 또한 동년 5월 1일과 6월 1일 차례로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進口食品境外生產企業注冊管理規定)”과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進出口預包裝食品標籤檢驗監督管理規定)”을 시행하여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기업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미등록 기업의 수출을 차단하며 수입 포장식품의 중문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였다. 그 외 2013년 1월 1일부터 “식품안전국가표준포장식품영양표기통칙(食品安全國家標準預包裝食品營養標籤通則, GB28050-2011)”을 시행하여 영양성분 표기와 영영성분기능 공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통되는 모든 식품 포장에 영양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進出口乳品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進出口食品安全管理辦法)”,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중병원균제한량(食品安全國家標準食品中致病菌限量, GB29921-2013)”, “식품첨가물 수출입 검험검역감독관리규범(進出口食品添加劑檢驗檢疫監督管理工作規範)”, “식품첨가제 신제품 관리방법(食品添加劑新產品管理辦法)” 등을 통해 중국 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전국적인 관리 규정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위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감

31) 國家食品安全監督體系十二五規劃

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중국의 수입식품규제에 관한 법률³²⁾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국 내 한류 영향이 맞물려 중국의 한국식품에 대한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³³⁾ 그러나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업체들은 중국의 검역체제와 통관절차, 수입식품 규제 등의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중국의 다양한 수입식품 규제제도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식품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입식품 규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식품 중문라벨 및 설명서’에 관한 내용과 ‘수출입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조항을 들 수 있다. 수출입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조항은 수입되는 식품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류 첨부가 필수이며 중국식품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

32) 중국법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규장,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범성문건 및 특별행정구의 법규, 국제조약·국제관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규범성 문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건을 통칭한다. 그리고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판법(辦法) 등도 법률류(法律類)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법을 해석할 때에는 비록 법이라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한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판법(辦法) 등도 협의(狹義)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국무원에서 공포한 조례(條例), 규정(規定), 판법(辦法), 결정(決定)과 명령(命令) 등이 규범성문건일 경우 모두 행정법부류에 속한다. 규장은 행정규범으로서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정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효력은 동일하고 각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통용된다. 따라서 중국의 수입식품규제에 관한 법률로 통칭하기로 한다.
<http://world.moleg.go.kr/>(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중국법의 체계와 검색방법”, 검색일: 2016.7.27.

33)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Z7GCT3bTvd4c3rSh9fTbVg2g1Px2CcvCLDYcP9zkG7KGrfYQv2Gh!-544285836?bbsId=BBSMSTR_1310&ntId=134&layoutMenuNo=22759&siteId=foreign&searchCtgr=&searchCnd=&searchWr=&recordCountPerPage=10/ 관세청 자료, 『중국의 식품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연구』, (2014.3.25.), 검색일: 2016.4.2.

입업체의 해외 수출업체, 해외식품생산기업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수입 식품이 중국의 법, 법규, 식품안전표준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해 심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내 對중 수출기업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수입중지, 리콜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식품안전법을 통해 식품안전표준, 식품검사, 식품안전위험검사 및 평가, 식품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법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또는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나.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進出口食品安全管理辦法)

2011년 9월 13일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총국령 제144호로 발표하였으며 2012년 3월 1일 시행되었다. 동 방법은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식품 수입기업 등록여부, 수출상 및 대리상, 검역심사, 항구검역 검사, 수령인, 안전검사, 위법기업리스트, 리콜제도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수입절차 및 요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 식품 생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입식품이 중국인의 신체 및 재산 그리고 기타 손실을 끼쳤을 경우, 외국의 생산업체는 소비자 및 관련자들에게 배상해야하며 안전기준에 미달되거나 유독, 유해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그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³⁴⁾

다. 수출입상품검사법(進出口商品檢驗法)

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2년 4월 28일, 2013년 6월 29일 차례로 개정되었다. 내용은 총 6장 41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은 수출입상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규범화하며, 사회공익과 수출입업무의 합법적인 권익 수호 및 대외무역의 발전촉

34) 食品安全法 第一百三十九條, 第一百四十條

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³⁵⁾ 국무원 수출입상품검사부서가 전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관장하고 지역별 수출입상품검사기구는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관리한다. 국가상품검사부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해야 할 수출입상품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상의 수출입 상품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수출입상품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결론에 불복하거나 상품검사기구의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신청 또는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³⁶⁾ 또한 법률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벌금부과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식품라벨관리규정(食品標識管理規定)

2011년 4월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수입포장식품 라벨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공고(關於運行進口預包裝食品標識管理系統的公告)”를 발표하고 동년 6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중국어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식품라벨관리규정(食品標識管理規定)”³⁷⁾ 및 “수출입포장식품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進出口預包裝食品標識檢驗監督管理規定)”³⁸⁾에 따르면 국가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입포장식품라벨검험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현급이상 지방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관할 지역의 식품라벨 감독관리 사업을 수행한다. 중국에 수입되는 최초의 포장 식품은 원라벨 양식과 중문라벨 양식, 번역본, 수입상 및 대리상의 공장영업증 복사본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포장식품의 라벨에 포함되는 내용은 식품명칭, 배합원료표, 내용량과 규격, 제품안전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자,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등이다.³⁹⁾ 또한 수입하는 포장식품의 라벨은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부합해야하며 수입포장식품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라벨 양

35) 進出口商品檢驗法 第一條

36) 進出口商品檢驗法 第二十八條, 第二十九條

37) 食品標識管理規定,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102호, 2008.09.01

38) 進出口預包裝食品標識檢驗監督管理規定,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2년 27호 공고, 2012. 6.1실시

39) 預包裝食品標識通則 GB7718-2011(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2012. 4.20실시)

식 및 검사결과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식품으로 판정한다.

중문라벨은 보통 수입대행사를 통해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라벨에 중문설명을 표기해야 한다(첫째, 의학임상에서 특수사용자에게 해가 됨이 증명된 경우, 둘째,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한 경우, 셋째,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합법적인 유전자 변형원료가 포함된 경우, 넷째, 법률, 법규 및 국가표준 등에서 중문설명을 규정한 경우).⁴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식품라벨의 표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첫째,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의 위조 또는 허위표시, 둘째, 식품생산자 위조, 기타 생산자의 명칭이나 주소 위조 또는 사칭, 셋째, 생산허가증 표기와 번호 위조, 사칭 및 변조, 넷째, 법률 및 법규가 금지한 기타 행위).⁴¹⁾

3. 중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및 통관

가. 중국의 식품 위생검역규정

중국의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수입산 식품, 식품 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은 중국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에 등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또는 대리상, 생산기업은 국가질검총국에 등록해야 한다. 수출입식품, 화장품의 사업자 또는 대리인은 수출입전에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라벨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요구와 부합하는가와 품질관련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한가에 관한 검험을 진행하고 라벨검험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⁴²⁾ 우선 수출입 검험검역기관의 검역에 합격한 뒤 통관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 통관수속을 마쳐야 한다.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의약품은 품목별로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의약품 수입을 위해 보건의약품 등록신청 시, CFDA는 신

40) 食品標識管理規定, 第十六條

41) 食品標識管理規定, 第十九條

42)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實施條例(국무원 령 447호, 2005.08.31.), 第三十四條

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상표 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⁴³⁾ 소요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1) 식품첨가물 수출입 검험검역감독관리규범(進出口食品添加劑檢驗檢疫監督管理工作規範)

식품첨가물 수출입 검험검역감독관리규범은 식품첨가물 수출입 검험검역관리감독과 식품첨가제 신제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식품안전법과 관련 조례 및 수출입상품 검험법 등에 따라 2011년 6월 1일 시행되었다.⁴⁴⁾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식품안전국가표준제품, 국무원 위생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중국 내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 “식품첨가물사용위생표준(GB2760)”과 “식품영양강화제사용위생표준(GB14880)”에 등록된 제품, 식품안전법 실시 이전 수입기록이 있으며 국가표준 식품안전 식품첨가물 리스트에 등록된 제품 등이어야 한다. 식품첨가물은 수입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 기준에 따른 포장 및 중국어라벨,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그 외 현지 검역기관에 제품용도 표시가 있는 무역계약서 또는 수출입자 양측이 제출한 용도 설명 및 식품첨가물의 전체 성분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⁴⁵⁾

(2) 식품첨가제 신제품 관리방법(食品添加劑新產品管理辦法)

식품첨가제의 신제품 관리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⁴⁶⁾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위험평가를 거친 안전 확인증명을 구비해

43)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무역장벽보고서”, 2013년 12월 제31면.

44) 進出口食品添加劑檢驗檢疫監督管理工作規範(質檢總局2011年第52號公告), 爲規範進出口食品添加劑檢驗監管工作, 完善進出口食品添加劑檢驗監管法制體系, 推動進出口食品添加劑檢驗監管工作法制化、規範化、科學化, 根據《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及其實施條例、《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及其實施條例、《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植物檢疫法》及其實施條例, 以及《國務院關於加強食品等產品安全監督管理的特別規定》規定, 國家質檢總局制定了《進出口食品添加劑檢驗檢疫監督管理工作規範》, 現予以公布.

45) 該規範 第四條至第十八條

야 하며 식품첨가제 신제품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식품첨가제 품종에 미 기재된 제품, 위생부가 사용허가를 공고한 식품첨가제 품종에 미 기재된 제품, 사용범위 또는 용량을 확대한 식품첨가제 품종을 가리킨다.⁴⁷⁾ 식품첨가제 신제품을 생산, 경영, 사용, 수입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식품첨가제신제품허가신청서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첨가제의 명칭, 기능, 용량과 사용범위, 기술적 증명과 사용효과 관련 자료, 품질규격, 생산공정검사방법 또는 관련 설명, 안전성평가자료, 라벨, 설명서 식품첨가제 샘플, 타국이나 국제조직의 생산·사용 허가를 받은 안전성평가자료).⁴⁸⁾ 이 외에도 최초로 식품첨가제 신제품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상술한 자료뿐만 아니라 다음의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수출국 관련부처에서 발급한 해당 첨가제의 본국생산 또는 판매 허가관련 자료, 생산업체 소재국 관련기관 또는 조직이 생산기업에 발급한 심사 또는 인증 증명자료).⁴⁹⁾

(3)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進出口乳品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⁵⁰⁾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對중국 유제품 수출 위생허가증⁵¹⁾을 발급하고,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

46) 食品添加劑新產品管理辦法(衛生部令第73號), 爲加強食品添加劑新產品管理, 根據《食品安全法》和食品安全法實施條例有關規定, 制定本辦法.

47) 該辦法 第2條

48) 該辦法, 第六條, 申請食品添加劑新產品生產、經營、使用或者進口的單位或者個人(以下簡稱申請人), 應當提出食品添加劑新產品許可申請, 並提交以下材料: (一) 添加劑的通用名稱、功能分類, 用量和使用範圍; (二) 證明技術上確有必要和使用效果的資料或者文件; (三) 食品添加劑的質量規格要求、生產工藝和檢驗方法, 食品中該添加劑的檢驗方法或者相關情況說明; (四) 安全性評估材料, 包括生產原料或者來源、化學結構和物理特性、生產工藝、毒理學安全性評估資料或者檢驗報告、質量規格檢驗報告; (五) 標籤、說明書和食品添加劑產品樣品; (六) 其他國家(地區)、國際組織允許生產和使用等有助於安全性評估的資料. 申請食品添加劑新產品擴大使用範圍或者用量的, 可以免于提交前款第四項材料, 但是技術評審中要求補充提供的除外.

49) 該法, 第七條, 申請首次進口食品添加劑新產品的, 除提交第六條規定的材料外, 還應當提交以下材料: (一) 出口國(地區)相關部門或者機構出具的允許該添加劑在本國(地區)生產或者銷售的證明材料; (二) 生產企業所在國(地區)有關機構或者組織出具的對生產企業審查或者認證的證明材料.

50) 본 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의 식품안전관리체제와 식품안전상황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최초로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은 그 정부 주관부서에서 국가질검총국에 수의위생과 공공위생 법률 및 법규체제, 조직기구, 안전위생컨트롤체제, 동물 역병 검측모니터링체제 및 중국에 수출할 제품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2) 그 외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제품 생산기업 등록제도'를 실시하여 등록된 기업은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유제품은 중국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중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기타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⁵³⁾ 수입 유제품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건강과 안전에 유해할 경우, 수입상은 리콜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동시에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54) 본 법 5장에서는 수입 유제품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허위 날조 행위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어긴 경우, 검사검역기구 비안(備案)을 거치지 않은 경우 및 기타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관한 법적 책임 규정을 마련하여 벌금부과 및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⁵⁵⁾

(4)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중병원균제한량(食品安全國家標準食品中致病菌限量, GB29921-2013)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중병원균제한량 규정은 음료, 냉동식품, 육류 및 수산식품 등 총 11대 분류 포장식품에 대해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및 오염균 등 5가지 병원균 제한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은 어류, 계류, 새우류 등을 원료로 한 수산 조미

51) 기존의 對중 수출 시, '검역허가증'이 필요한 유제품은 생유, 생유제품, 신선우유였으나 "수출입 유제품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저온살균 과정을 거친 조제우유도 검역검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유제품에 대해 중국 내 진입장벽을 높여 중국산 유제품을 보호하고 중국의 낙농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52) 進出口乳品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 第十五條

53) 該法 第四十一條

54) 該法 第四十三條

55) 該法 第四十七條至五十三條

품과 김치,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일반세균수와 미생물 규격, 테스트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對중 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의 김치를 자국의 파오차이로 간주하여 100그램당 대장균 수를 30마리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김치 수출이 불가능 한 상태였다. 그러나 작년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으로의 김치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대 중국 김치 수출에 대비하여 지난해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김치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대 중국 수출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통관 사전절차(수출업체 등록 및 라벨링 제작)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앞으로도 對 중국 김치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어⁵⁶⁾ 우리나라 김치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나. 중국의 식품 통관과 한·중 FTA 통관절차

일반 식품의 對중국 수출시에는, 市공상행정부에서 식품유통허가증(食品流通許可證)을 취득한 후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수출에 있어 식품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 인증, 위생 인증, 식검증(植檢証), 밀봉증명서, 영양성분 검측 결과 보고서, 자유 판매 허가증 혹은 권한⁵⁷⁾ 등이다.

수입식품 통관절차는 세관신고, 제품심사, 관세징수, 통관·반출입 등의 4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신고절차: 현재 서면신고, 구두신고, EDI등으로 구성된다.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 및 대행회사를 통해 통관신고가 가능하다.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이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⁵⁸⁾

56) <http://www.mfds.go.kr/index.do?mid=676&pageNo=1&seq=29954&cmd=v>, 식품의약품 안전처 언론홍보자료, 검색일: 2016.2.11.

57)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80&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1039126&ARTICLE_ID=5030629&UPPER_MENU_CD=M1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검색일: 2016.5.10.

두 번째, 심사절차: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식품의 가격, 성질, 원산지, 상태, 수량 등의 실제상황과 서류신고 내역에 관해 검사하고 확인한다. 세관의 검사방식은 전수검사, 발취검사, 외형검사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세 번째, 징수절차: 세관법 및 수출입관세조례에 따라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며 중국 수출입세칙에 근거하여 관세율을 정한다.⁵⁹⁾

네 번째, 통관: 세관 담당자는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의 절차를 다시 검토 후에 물품을 반출시킴으로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며 통관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세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대조확인을 받아 수정하거나 보정을 끝내야 세관 감독이 완료된다.

중국은 2011년 개정된 “기업분류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차등통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분류제도, 사전신고, 인터넷신고, 우선통관, 우선보세운송, 방문검사, 담보 후 통관 등의 통관편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⁶⁰⁾

한·중 FTA 통관절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법령이 모든 지역 세관에서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보장⁶¹⁾ 하였으며 양국은 효율적인 물품 반출을 통한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간소화된 세관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다.⁶²⁾ 또

58) 과태료는 입항 후 15일부터 계산하여 신고일까지 매일 CIF가격의 10,000분의 5를 징수한다.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수입계약서, 수입화물인보이스, 수입적하목록, 수입화물 B /L, 세관신고위임계약서, 식품위생검역증, 세관신고에 필요한 증명, 검사검역면제증명서류, 기타 관련 서류 등이다.

59) 관세율표-세율적용(특혜관세율, 보통관세율)-과세가격의 심사확정-세액계산-세액납부와 징수유예기록.

60) 차등통관이란 성실기업에는 1분 통관 및 검사면제 등의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불성실 기업은 집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심사 위주 통관에서 전자자동화와 중점심사로 전환하고 있으며 세관최적화통관 감관제도를 실시하여 사전신고제를 통해 세관의 사전승인 하에 도착 전 3일 내에 통관 및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집중신고 및 세관 업무시간 외 공휴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통관 수속이 가능하다. 세법연구센터,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9면.

61) 한·중 FTA 협정문 제4장 제4.4조.

62) 한·중 FTA 협정문 제4장 제4.14조, 제4.15조, 도착 즉시 반출을 위해, 물품 도착 전에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통관 요건을 충족시키기 이전이라도 담보, 보증금을 지불할 경우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착시로부터 48시간 이내 통관을 원칙으로 하며, 금지·제한 물품이 아닌 한 보세창고 반입 없이 즉시 반출이 가능하다. 또한 특송화물(관세법상 등록된 특급택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중량, 가격과 상관없이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며, 단일 적하목록 제출 및 서류 최소화를 허용하였다.

한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자국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규정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그 외 요건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⁶³⁾ 그 밖에 신청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사전 심사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상품 도착 후 48시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와 자동화 시스템 사용에 관한 내용을⁶⁴⁾ 명시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산지 첩터, 통관 및 무역원활화 첩터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원산지소위원회 및 통관소위원회로 구성되는 관세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정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며,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세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⁶⁵⁾

Ⅳ. 중국의 식품위생검역규범의 국제적 검토 및 한·중 FTA활용

1. 중국의 식품위생검역규범의 국제적 검토

위생검역규범의 국제적 검토와 관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WTO 회원국 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 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다자주의 무역 자유화 및 공정한 무역 거래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⁶⁶⁾ 통일된 SPS 조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중국의 식품위생 관련 법규와 WTO 협정과의 합치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63) 한·중 FTA 협정문 제4장 제4.5조.

64) 한·중 FTA 협정문 제4장 제4.12조, 제4.14조.

65) 한·중 FTA 협정문 제4장 제4.18조, 제4.19조.

66) 秦玉變, 尹紅強, 趙同娜, “貿易技術壁壘與我國食品產業安全法律規制問題研究進展”, 『食品科學』 第19期·總第35期, (2014年), 324頁.

중국의 식품위생검역규정과 WTO 협정의 비교

<p>위생검역법률 및 관리감독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의 감독과 관리에 있어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환경부, 품질검사국, 공상국 등이 관련되어 있으나 서로 간 소통부재와 책임중복 현상이 발생함 • 중앙관리부문과 지방관리 부문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공동 관리의 허점과 모순이 발생함 • 체계적인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식품안전사고 발생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부과와 집행에 문제가 발생함 • 식품안전 관련 법규정 미비와 500개 이상의 동식물관련 행정법규 및 규정의 방대함으로 상호충돌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p>식품안전 및 위생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식품안전 표준은 국가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으로 분류되며 품목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일부 기업표준은 영업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표준을 사용하는 제품은 국가표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국내 외 검사표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식품 분류 차이가 존재하며 중문 라벨 적합성 검사에서도 불합격 사례 증가하고 있음
<p>위험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세균 기준 수에 있어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WTO 분쟁 대상이 됨 •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치로 인해 통관이 거부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과학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음⁶⁷⁾ • 중국의 위생검역규제에 근거한 조치들은 정당한 과학적 증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⁶⁸⁾ 위험평가와 관련된 입법부재의 문제가 있음
<p>투명성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법률은 투명도가 낮고 관련 법률 및 조례는 완비되어 있지 않음 • 관련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이 빈발하게 재개정되고 있어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중국이 재·개정한 SPS 관련 법률과 표준 그리고 지방성 법규를 신속히 통보하지 않아 투명성이 낮음

출처: 필자 자체정리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대대적인 법제 정비에 들어갔으나 중국의 위생검역규범은 WTO SPS 협정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며 위 표와 같이 주로 위생검역 법률 및 관리감독 시스템, 식품안전 및 국제표준, 위험평가, 투명성 원칙 등에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위생검역법률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내용과 관련하여 WTO SPS 협정 제2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체계적인 법률시스템 미비와 500개 이상의 동식물관련 행정법규 및 규정의 방대함으로 상호충돌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 및 국제표준에 있어서도 WTO SPS 협정 제3조의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현재 중국에는 음용수에 관한 5개의 국가표준이 있으며 그 중 수돗물을 제외한 포장음용수에 적용되는 국가표준은 4개가 있다. 그런데 포장음용수 국가표준은 수돗물 표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장균군 지표와 관련하여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포장음용수는 이전 기준을 적용하여 포장음용수 기준이 국제규격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포장음용수와 관련하여 광천수 국가표준과 산천수 지방표준을 비교해 보면 산천수 지방표준이 국가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베이징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음용수 10여 종 중 1/3이 기업표준을

67) 윤성혜, “한·중 자유무역협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2015, 98면.

68) 2003년 12월 중국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분쟁에 대응하여 미국산 쇠고기 및 가공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SPS 협정 제5조 제7항의 예방적 조치에 입각하여 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2년까지도 중국의 과학적 기술로는 위험평가가 불가능 하였다.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및 가공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 실행 이후,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우병을 이유로 한 중국의 수입금지는 SPS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왕양, 조현숙, “중국의 위생검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7호 2013년 12월.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표준은 “영업비밀”로 인하여 위생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⁶⁹⁾ 위협평가에 있어서도 WTO SPS 제2조 2항의 과학적 조치와 제5조의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협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이 상황에 따라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협평가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과도 충돌하고 있다. 이밖에도 WTO SPS 협정 제7조 투명성 원칙에 따라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의 통보와 관련 정보 제공⁷⁰⁾에 있어서도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대부분의 규정은 내부적인 것으로 적시에 공개되지 않아 투명도가 매우 낮다.

WTO SPS 협정의 기본원칙은 국별로 상이한 SPS 조치의 조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별 SPS 조치의 통일을 통해 국제무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나라별 SPS 조치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주권적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⁷¹⁾ 중국에 위생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할 수는 없다. 아울러 WTO 는 회원국들에게 국제표준 채택을 권고하나 SPS협정에서 국제기준보다 높은 위생검역조치의 시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국가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장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SPS 관련 법규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며 국제표준과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투명성의 원칙과 위협평가, 관리감독 체계에 있어서도 제도와 집행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對 중국 식품수출에 관하여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은 중국의 식품 안전 및 위생 표준을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대대적으로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정비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중 FTA SPS 조치는 WTO 수준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SPS 관련 쟁점은 식품무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

69) 박원배, 장은정, 정지형, 『일본·중국의 생수 관련 법제도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5, 95-96면.

70) 박용용, 『WTO 협정』, 법문사, 2011, 170-175면.

71) SPS Agreement Article 2.1. “Members have the right to tak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자국의 식품법규를 위반한 수입식품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며 중국의 식품중 병원균 제한량 규정으로 인해 수산 조미품과 젓갈, 김 등의 식품에 대한 일반세균수와 미생물 규격, 시험절차를 엄격히 규제하여 이러한 식품 수출업체는 중국시장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⁷²⁾ 또한 현재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품목인 바나나 우유는 중국내에서도 인기가 높다. 바나나 우유는 한국에서는 유제품으로 분류되어 수출 시 검역증만 발급하나 중국은 이를 음료로 분류하여 검역증 및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율 또한 유제품에 비해 높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유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⁷³⁾. 그 밖에 통관절차의 지연으로 식품의 짧은 유통기한이 초과되어 통관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SPS 무역장벽의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지속적인 합의가 중요하며 한·중 FTA SPS 위원회를 잘 활용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한·중 FTA 활용

한·중 FTA 협정문에는 한·중 FTA 이행 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개발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 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통관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⁷⁴⁾ 또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간접 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불충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검증제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의 기체결 FTA 최초로 방문 검증 절차

72) 2016년 3월 중국 산시성으로 수출됐던 2만 달러어치의 조미김이 현지에서 전량 반송조치되었다. 중국 위생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조미김은 가열처리한데다 건조 상태로 유통되어 세균 번식 가능성이 크지 않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관련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산 김이 세균 수 초과를 이유로 반송된 사례는 중국이 유일하며 자국 조미김 수입시장의 65%를 차지하는 한국산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626002700038/?did=1825m>, 검색일: 2016.5.29.

7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954>, 검색일: 2016.5.2

74)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679&state=view&idx=51700, 산업연구원 보도자료“한·중 FTA 활용 극대화 방안 모색”, 검색일: 2015.12.22.

를 도입하였고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절차 및 위원회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투명성 보장, 통관 및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통관 절차의 신속화, 간소화(사전심사, 자동화시스템사용) 및 일관적인 세관행정 확보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중 FTA 48시간 통관 및 전자통관 조항이 이행될 경우, 우리기업들의 통관관련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중국현지에서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이행을 위한 관세위원회와 통관 및 무역원활소위원회, SPS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양국 간 협의조항을 도입하였으며 시험기관 상호인정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⁷⁵⁾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 한편, 중국 식품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를 고려하여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그 일례로 중소기업이 한·중 FTA 활용 준비 단계부터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윈스톱 지원창구인 ‘차이나데스크’를 개소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세 가지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첫째 한·중 FTA 활용 지원이 있다. 내용으로는 부처 합동으로 對 중국 수출기업 중에서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000개 사를 대상으로 홍보, 정보제공·교육·컨설팅 중점 지원, 중국 현지 바이어 초청 및 FTA 활용 설명회 개최, 중국 내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 3선 도시대상 주요 유통채널 진입, 통관지원 및 홍보마케팅 등의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둘째, 통관과 비관세장벽에 관한 애로 해소이다. 통관 및 비관세 장벽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한·중 세관 간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및 신속 통관 지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⁷⁶⁾

75) “한·중 FTA협정문”참고 정리, <http://www.fta.go.kr/cn/doc/1/>(한·중 FTA홈페이지)

76) <http://www.motie.go.kr/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검색일: 2016.4.29.

셋째, 중국발(中國發), 중국향(中國向) 투자 중점유치이다.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자본을 중점 유치 할 계획이며 투자애로해소 전담팀을 가동하여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계획을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2015년 상반기 중국의 수입식품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11.9%, 2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에서만 10.8%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중국은 이 기간에 총 179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식품을 수입하였다. 한국은 수입 상위 10개국에 10번째로 포함돼 있으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고 이러한 원인은 식품첨가제의 기준 미달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⁷⁷⁾ 2020년까지 중국의 수입식품 시장규모가 4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⁷⁸⁾ 우리 기업에게 중국 식품시장 진출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식품의 對중 수출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이라는 상상은 버려야 한다. 중국의 식품인증은 유럽인증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에 맞게 업그레이

77) 지역별 출입국검역기구(出入境檢驗檢机构)가 57개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서 중국 식품 안전표준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검출하였다. 기준 미달제품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국가 혹은 지역은 유럽, 대만, 동남아, 미국, 일본, 한국(6위),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와 호주 순이며, 기준 미달 검출 총 횟수의 91.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식품 기준 미달의 사유는 총 19가지이며, 상위 10가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품첨가제 불합격, 미생물오염, 품질 불합격, 라벨 불합격, 인증 불합격, 오염물질 표준 초과, 화물 인증 부적합, 포장 불합격, 비식용 첨가물 포함, 유전자 변이 성분 포함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안전·위생문제 중 식품첨가제 표준 초과, 미생물 오염, 오염물질 표준 초과, 품질 불합격, 라벨 불합격, 인증 불합격 등이 있다.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80&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SCH_TRADE_CD=1039126&ARTICLE_ID=5030629&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코트라 보도자료) 검색일: 2016.5.10.

78) <https://sites.google.com/site/ftatrade119/han-jung-ftajeongbo/nyuseu/jung-gugbigwansejangbyeogttwieoneomgisigpum>(중국 비관세장벽 뛰어넘기: 식품), 검색일: 2016.5.28.

드 한 것으로 오히려 유럽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한다. 중국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입식품에 대해 여러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특수 영양식품과 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과 같이 품목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들이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 식품관련 위생표준은 우리 기준과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⁷⁹⁾ 식품첨가물은 나라별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 제품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식품관련 위생표준은 국가의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기준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중국의 식품안전 감독 및 관리에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품질검사국, 공상국 등의 다양한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으나 이들 부서들 간 소통 부재로 인한 책임중복과 이익충돌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어 식품 안전 관리 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⁸⁰⁾ 더욱이 식품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시스템의 미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⁸¹⁾ 식품안전사고 발생 기업과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가와 집행에서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⁸²⁾.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식품관련 법제들의 미정비와 중국의 위생검역 체계, 그리고 통관절차까지 모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對중 수출 한국 식품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표준을 포함한 식품관련 법률·법규, 수입식품 규제제도, 그리고 일반적인 중국의 식품 통관절차와 한·중 FTA의 통관 관련 규정까지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

79)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생수와 중국 생수의 분류기준 및 위생기준이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미네랄워터 병입수 제조 원수는 암반대수층 지하수·용천수, 염지하수, 해양심층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중국은 음용천연광천수, 음용순정수, 음용천연천수, 기타천연생수, 음용광물질수, 기타 생수로 구분한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질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위생기준이 국가표준(GB), 지방표준(DB), 기업표준(Q)으로 분류된다. 즉, 생수의 특성과 차별화를 위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위생기준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위생기준과 국가 기준간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원배 외 전게서, 99-101면.

80) 丁萍, “關於完善我國食品安全法律体系的反思”, 『法制博覽』第1期(上), 2015年, 21頁.

81) 楊猛, 孫穎, “我國現有食品安全監管体系的反思”, 『江蘇調味副食品』, 2016年 2期, 31頁.

82) 周道, “食品安全視角下我國食品貿易競爭力相關問題研究”, 『商場現代化』第16期, 2015年, 6頁.

올려 중국 식품 시장 진출 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점차 까다로워지는 위생허가 검사 및 통관규정, 심사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정확한 인식과 대비가 필요하다. 對중 식품수출 실무가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 식품 업체들은 중국 기준이 한국 기준보다 낮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중국정부는 빈발한 식품안전사고의 근절을 위해 2013년 정치협상회의에서 제1호 안건으로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문제'를 채택한 바 있다.⁸³⁾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파악하고 정부의 다양한 對중 식품수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의 식품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에 중국에서 시작된 한류는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식품의 중국 진출에 큰 시너지 작용을 하고 있다. 중국의 식품관련 규정 숙지와 한국정부 지원정책 및 한·중 FTA의 활용과 더불어 한류효과에 편승한다면 우리 식품의 對중 수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V. 맺음말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급진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외자를 대거 흡수하여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다 마침내 G2국으로 급부상 하였

8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자의 경우 중국의 일반 세균 수 기준은 1g당 750이하인 반면, 한국은 1g당 700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준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까다롭다. 또 구운 조미김의 경우 중국의 일반 세균 기준은 1g당 3만 이하이나 한국은 구운 조미김의 일반 세균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처럼 까다로운 중국의 식품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복숭아 음료 제조업체 A사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의 물량을 중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납과 규소 등이 중국 측의 기준보다 더 많이 검출되자 중국 당국은 이를 전량 소각했다. A사는 약 6000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했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업체가 통관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가장 많은 사례로 중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식용근거가 없는 원료나 조미료를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인삼'의 경우 국내에서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중국에서는 신자원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제품 내 한약재가 들어간 경우 식품은 건강식품으로 분류, 해당 업체는 CFDA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http://ntb.kita.net/barrier/usualy__news__view.screen?menuid=ntb020401&seq=267/, 검색일: 2016.5.13.

다. 중국의 눈부신 고속 성장과 관련하여 지리적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사이익을 누려왔으나 對中 의존도가 나날이 커지는 현실 앞에, 그에 따른 리스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중 FTA 체결 이후 양국 산업의 변화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관심과 연구가 쏟아지고 있으며 한·중 FTA 를 바탕으로 거대한 중국 경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공통의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어, 여타 국가에 비해 우리 기업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그에 따른 각 산업별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부유층 확대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 소비계층을 중심으로 삶의 질과 여유를 중시하는 웰빙식품, 고급식품,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식품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무엇보다 크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한국 대부분의 식품가공업체는 비교적 영세하여 대기업에 비해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전략 수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우리 식품 기업의 對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지침서 역할을 하기 위해 중국의 식품 관련 개별법과 수입식품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제도를 살펴보았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준비중인 기업은 앞서 살펴본 법제적 지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전략적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식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한·중 FTA가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로 기대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 및 진출 기회의 확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한국 식품의 안전성과 깨끗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중국인들의 식품에 대한 높은 수준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위생은 물론 브랜드파워 강화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 식품이 중국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품질 및 기술 향상 의지를 확보한다면 한국 식품산업의 對中 수출 확대와 중국 내수 시장 개척은 충분한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용길,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고찰”,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2015)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 수출실적 및 2015 수출방향』, (농림축산식품부, 2015.1.14.)
- 박응용, 『WTO 협정』, 법문사, (2011)
- 박원배, 장은정, 정지형, 『일본·중국의 생수 관련 법제도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5)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무역장벽보고서』, (2013.12.)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협정문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6.)
- 송창주, “한국 식품가공산업의 활로: ‘전략적 세계화’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방안”, 『식품기술』 제26권 제3호, (한국식품연구원, 2013)
- 윤성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규정 이행에 관한 법적 쟁점 - 식품무역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2015.11)
- 왕양, 조현숙, “중국의 위생검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7호 (2013.12.)
- 이준, 조영삼, 최재영, 조은정, 『중국의 식품시장 전망과 국내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13. 11)
- 이유시, 권찬혁, 박희라, 권기성, 하상도, “국가별 식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공정서 운영체계 현황 분석”, 『Safe Food』 6권2호, (2011)
- 이태호 외 공저, 『농업이 미래다』, (삼성경제연구소, 2011.10.21.)
- 정이근, “중국 행정허가법의 내용과 평가”, 『公法學研究』 第5卷 第3號, (2004.12)
- 정호철, 문광덕, 정신교, “중국 농식품 가공 산업의 현황과 발전”, 『식품과학과 산업』 제43권 제2호, (한국식품과학회, 2010)

- KOTRA,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 안내서』, (KOTRA,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2015.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 유망수출산업」, Issue Report, 2015-산업이슈-10,, (2015.9.2)
- 황충조, “중국의 식품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연구”, 주상하이총영사관 자료, (2014)

〈외국문헌〉

- 陳仕學, “完善食品安全政府監管的路徑”, 『江蘇調味副食品』 第4期 總第139期, (2014年)
- 陳梅, “關於食品安全控制措施實際應用的探討”, 中國化工貿易, (2011年3期)
- 丁萍, “關於完善我國食品安全法律体系的反思”, 『法制博覽』 第1期(上), (2015年)
- 封安全, 劉喜濤, “深化黑龍江省与韓國經貿合作的對策建議”, 『對外經貿』 第6期 總第252期, (2015年)
- 何莉, “論中國食品安全監管机制的完善路徑”, 『食品与机械』第31卷第1期, (2015年)
- 李富强, “研究《食品安全法》在實際應用中存在的問題及相應措施”, 法制博覽, (2016年16期)
- 秦玉變, 尹紅强, 趙同娜, “貿易技術壁壘与我國食品產業安全法律規制問題研究進展”, 『食品科學』 第19期·總第35期, (2014年)
- 王可山, “食品安全政府監管的困境与對策研究”, 『宏觀經濟研究』 第7期, (2012年)
- 王群, “論我國食品安全監管完善之路徑”, 『貴州警官職業學院學報』 第4期 總第24期, (2012年)
- 徐信貴, “食品安全風險警示的制度屬性与法治要素”,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16年6期)
- 楊猛, 孫穎, “我國現有食品安全監管体系的反思”, 『江蘇調味副食品』, (2016年 2期)
- 周道, “食品安全視角下我國食品貿易競爭力相關問題研究”, 『商場現代化』 第16期, (2015年)
- 祝小茗, “國外食品安全犯罪的法律規制及其啓示”, 江蘇調味副食品, (2016年2期)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mafra.go.kr>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www.globalwindow.org

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http://www.sfda.gov.cn>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http://www.aqsiq.gov.cn>

中國國家食品安全風險評估中心网站, <http://www.cfsa.net.cn>

中國國家統計局网站, <http://www.stats.gov.cn>

中國法律法規檢索系統, <http://law.npc.gov.cn>

中國產業調研网, <http://www.cir.cn>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http://www.moa.gov.cn>

中華人民共和國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 <http://www.nhfpc.gov.cn>

中華食品信息网, <http://www.foods-info.com>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Legislation for food exports to China in This Korea-China FTA Era

Jang, eun-jeong

Ph.D./ Researcher Law Research Institute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in food safety and health, food industry has recently received global attention as an important industry that creates a big added value. In China, which boasts of 1.3 billion population, its food market is increasing at a fast speed with the help of Chinese economic growth. As national income and life standard have been increased, preference

of food products has been changed from quantity to quality, and a trend has been revealed to take a serious view of quality and safety. Also an important issue has been raised that how to produce and supply the high quality and safe food. China has already enacted law, regulation, and system about food system, reorganized civil polity about food safety management, and prepared counter-plan to secure the quality and safety for food products. But a few items have been existed to be complemented and improved. Furthermore in recent years, food safety accidents have taken place frequently in China, and this kind of problems is consequently more compounded to the point of infringing on people's legal rights. Therefore Chinese prefer imported foods than their local food and includes the Korean food. Especially, China is regard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our foods highly and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also the effect of Korean wave. So Korea-China FTA is a good opportunity to enter the Chinese food market. As food market grows globally, the Korean government is exerting every effort to improve global competitiveness at the national level.

As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e a new tonic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growing trends of Chinese foods industry, it is urgent to expand our foods industry to enter the Chinese foods market and establish strategies accordingly. However,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n entering the Chinese market is lack of understanding of Chinese laws. Chinese foods market is an emerging blue ocean, but related laws are not yet established and various regulatory systems are implemented on imported foods. So it is essential for enterprises to understand food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thin China.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related information necessary for our enterprises and strateg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smoothly.

Key words : Korea-China FTA, food, export, Chinese legislation, Chinese market